이천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리 지침

소관부서 : 건설과

제정 1996 · 6 · 27 예규 제58호

1. 목적

이 지침은 최근 대형 건설공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실공사를 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벌칙이 강화되었고 시 자체에서도 설 계·시공·감리에 대한 제재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자 함.

2. 조치대상

- 가. 설계용역, 공사시공 및 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
- 나.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했을 때
- 다.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
- 라.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 및 공중에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

3. 부실유형

가. 부실설계

- (1) 지형여건과 부조화된 구조물의 설치 혹은 누락
- (2) 지하매설물 조사 누락(통신케이블, 관정, 가스관, 수도관 등)
- (3) 측량 기준점을 임의 선정
- (4) 현지현황과 향후 발전 여건 및 관련 개발계획 등의 종합분석 미흡
- (5) 용지 및 조사 누락
- (6) 지하지반 추정 불성실로 과다 및 과소 계상
- (7) 설계단가 적용 착오등으로 공사비의 과다 및 과소계상

나. 부실공사

이천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리 지침

- (1) 조잡시공
- (2) 적정인원 및 장비 미배치
- (3) 검측 미실시 및 임의 시공
- (4) 안전조치 미이행
- (5) 불량자재 사용
- (6) 지시사항 불이행
- (7) 시설물 규격 미달

다. 부실감리

- (1) 감리원의 현장 무단이탈
- (2) 보고의무 불이행
- (3) 품질관리, 규격관리등 감리 불철저

4. 조치사항

가. 부실설계

- (1) 설계용역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말 설계변경 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을 평가
 - -설계용역 사전 자격심사 (P.Q)시 반영하여 감점조치
 - ※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의 설계등 용역업자 선정 평가기준"입찰참가제한"의 절대평가시 감점할 수 있다.
- (2) 부실설계로 발주처나 시공자에 현저한 손실을 끼쳤을 때 변상토록 할수 있다.
- (3) 부실설계를 한 설계용역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및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.

※설계등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기준 : 별표 3 ※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 정지기준 : 별표 4

나. 부실감리

- (1) 1단계 : 시정지시
 - (가)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

- (나)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
- (다) 기타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
- (2) 2단계 : 감리원의 교체
 - (가)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을 이탈한 경우
 - (나)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
 - (다) 감리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
 - (라) 감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
 - (마) 고의·과실로 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을 때

다. 부실공사

- (1) 1단계 : 시정지시
 - (가) 공사관리 소홀, 안전관리 소홀
 - (나) 기타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
- (2) 2단계 : 현장소장교체
 - (가) 1단계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
 - (나) 보고없이 3회이상 현장의 무단이탈
 - (다) 발주기관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
 - (라)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※부실공사 요인에 대한 세부조치내역: 별표 1
- 라. 공사에 대한 시공 평가결과를 공사발주시 반영
 - (1) 시공평가표에 의한 평가 : 년 2회
 - (2) 현장별로 평가결과 평균점수 미달시 경고
 - (3) 2회이상 평균점수 미달시 현장소장 교체
 ※ 시공평가표: 별표 2

부칙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부실공사 요인에 대한 세부조치 내역

부 적 격 항 목	부적격 행위	조 치 내 용
(일반사항) 현장소장의 현장 무단이탈	1회 2회 3회	사유서 징구 경고 교체
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	1회 2회	시정지시 교체
적정인원 및 장비 미배치	1차 2차	시정지시 교체
(공사관리) 검측결과 미시정	1회	경고
검측불응 및 임의시공	1회	현장소장 교체
시설물 규격미달	1회	재시공(중대한 경우 현장소 장 교체)
조잡시공	1회	강 <u>내</u> 세) "
(안전관리) 안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	1차 2차	시정지시 현장소장 교체
(품질관리) 불량자재 사용	적발시	현장소장 교체
(공정관리) 적정공정 여부	5일부진시 10일부진시	시정 경고
	공정만회 대책미흡	현장소장 교체

[별표 2]

시 공 평 가 표

공사명 작성자: (인)

공 사 명						시공화	회사및	대표소자		
공사개요			1)공사					계약금	-	
공사기간	착 공		준	공				평가년		
2)평가항목	3)배점	평	가 세	부	내	용		배 점	배 점	적 요
4)평가결과										
계	100									
1. 품질관리	40	○ 관리시험설○ 검사시험○ 공종별 시○ 시설물 규○ 준공된 시○ 구조물의○ 기타 품질	및 지적시 공단계별 격관리 설물의 기 균열, 침혀 관리 상태	점검 동상 등	및 기 해 하자'		실적			
2. 공정관리	5	○ 공사기간 ○ 공정관리			<u>계</u> 적					
3. 안전관리	5	○ 안전관리○ 안전사고○ 안전진단	소 계획 및 ³	관리 4	계 실적					
4. 기술인력관리	4	○ 기술자 배 ○ 시험사 배	소 치상태		계					
5. 기술개발	10	○ 공법 도입○ 공정관리				실적				
6. 공사마무리 및 외관상태	20	○ 시설물의 ○ 공사외관 ⁹ ○ 주민의 여	의 세련도	상태	계					
7. 현장관리	5	○ 현장주변⁷○ 시설물별○ 가설물, 토	주변정리/		계 등 정	리				
8. 하도급관리	5	○ 하고급 관○ 하도급 계○ 공사비지를	소 :리상태 약적정		계					
9. 시공관리	5	○ 시행청의	소 지시사항	이행/	계 상태					

[별표 3]

설계등 용역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기준법

(제12조의2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입찰참가 제한기능
1.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 괴될 우려가 있을 때	, , , -	
가. 주요구조부가 손괴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친 때		12월
나. 주요구조부 전체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 져오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 래한 때		4월
다.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도는 공 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		2월
라.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 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		1월
2. 주조계산 등을 소홀히하여 시설물의 주요구 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		
가.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킨 때		4월
나.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 당한 사유없이 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	2월
다.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을 때		1월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입찰참가 제한기능
3. 사전조사 등을 소흘히하여 설계등 용역의 결 과가 현저하게 부실한 때	제20조의3제1항 제3호	
가. 공사비가 당초보다 50퍼센트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		3월
나.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 당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		1월
다.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때		1월
4.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·재료 등의 품질기 준·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 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 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		
가.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		2월
나.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		1월
5. 법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때	제20조의3제1항 제5호	
가. 도급받은 설계등 용역전체를 일괄하여 하 도급을 한 때		6월
나. 하도급범위를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다. 하도급 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때		2월 1월
6.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제20조의3제1항 제6호	2월
7.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 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		1월

위	반 호	행 위		해당법조문	입찰참가 제한기능
8. 법 제23조의2 도서 작성에 을 상세히 기	참여한 건설	설기술자의		제20조의3제1항 제8호	
가. 업무내용을 나. 전문분야별	허위로 기계 책임기술자(기술자)	- 대한 때 인 기술사는			2월 2월
다. 전문분야별	_ ,				1월
9. 신기술·신공 을 잘못하여 부실하게 될	건설공사기	· 부실하기		제20조의3제1항 제9호	1월
10. 다른 행정기 여 업무정지	_ , ,		정에 의하	제20조의3제1항 제10호	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기준 적용
11. 법 또는 법어	∥ 의한 명령	에 위반한	때	제20조의3제1항 제11호	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기준 적용

비고: "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의 손괴"라 함은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 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 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.

[별표 4]

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법 (제12조의2 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입찰참가 제한기능
1. 설계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 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 괴될 우려가 있을 때	, , , -	
가. 주요구조부가 손괴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로 공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친 때		12월
나. 주요구조부 전체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 져오거나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 대한 때		6월
대한 때 다.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도는 공 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		2월
라. 주요구조가 손괴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 중에 현저하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		1월
2.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하여 시설물의 주요구 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		
가. 주요구조부이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킨 때		4월
나.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어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정 당한 사유없이 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	2월
다. 주요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을 때		1월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입찰참가 제한기능
3. 사전조사 등을 소흘히하여 설계등 용역의 결 과가 현저하게 부실한 때	제20조의3제1항 제3호	
가. 공사비가 당초보다 50퍼센트이상 증가하여 발주청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		3월
나. 공사비가 당초보다 증가하여 발주청에 상 당한 손해를 야기시킨 때		1월
다. 현장의 시공여건을 무시하고 설계를 함으로써 주요구조물의 시공위치를 설계대로 시공할 수 없게 설계한 때		1월
4.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·재료 등의 품질기 준·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		
가.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어 구조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하게 한 때		2월
나.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		1월
5. 법 제2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때	제20조의3제1항 제4호	1월
6. 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	제20조의3제1항 제6호	2월
7.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 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		
가.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을 기준에 맞도록 상 세하게 작성하지 않음으로써 현장기술자에 게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주요구조부의 상 당부분을 잘못 시공하게 한 때		1월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입찰참가 제한기능
나.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		2월
8.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 을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한 때		
가. 업무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때		3월
나. 전문분야별책임기술자인 기술사등 특급기 술자·고급기술자 등의 서명·날인을 허 위로 기재한 때		3월
다.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하여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		1월
라. 전문분야별 책임기술자인 기술사등 특급기 술자·고급기술자등이 서명·날인을 하지 아니한 때		2월
9. 신기술·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		1일
10.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때	제20조의3제1항 제10호	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기준 적용
11.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을 때	제20조의3제1항 제11호	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기준 적용

비고 : "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의 손괴"라 함은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발생한 허용치 이상의 균열 또는 붕괴 등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.